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32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한민수・박상혁・임오경

이건태 · 김영호 · 박용갑

한준호 · 서영교 · 백혜련

정일영 · 박해철 · 송옥주

홍기원 · 이연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·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 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,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.

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40조등).

주요내용

가. 정치자금을 수입·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.

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4항제3호 중 "사본"을 "사본(인터넷 예금통장 사본 포함)"으로 한다.

제46조제5호 중 "사본"을 "사본(인터넷 예금통장 사본 포함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0조(회계보고) ① ~ ③ (생	제40조(회계보고) ① ~ ③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	4		
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			
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			
하여야 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3.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	3		
금통장 <u>사본</u>	<u>사본(인터넷 예금통장</u>		
	사본 포함)		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⑤ ·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		
제46조(각종 제한규정위반죄) 다	제46조(각종 제한규정위반죄)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			
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			
한다.	–.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제37조(회계장부의 비치 및	5		
기재)제1항 또는 제40조(회계			
보고)제1항 내지 제4항의 규			
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			
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			
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			

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, 정 치자금의 수입·지출금액과 그 내역, 수입·지출에 관한 명세서,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, 예금통장 <u>사본을</u>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·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 류를 허위기재·위조 또는 변 조한 자

<u>사본(인터넷 예금통</u>
<u>장 사본 포함)</u>
6.•7. (현행과 같음)